

2024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공고

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39조 및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, 제81조에 의거하여,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5일

구 리 시 장

- 사업내용 : 경유차를 LPG 어린이 통학차로 전환토록 보조금 지원
- 사업기간 : **2024. 3. 4. ~ 예산 소진 시 종료**
- 사업량 : **3대** (15,000천원)
- 지원금액 : **500만원/대 (정액지원)**
- 접수방법
 - 온라인 :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(<https://www.mecar.or.kr/>)
 - 방문 접수 : 구리시 아차산로 439, 구리시청 별관 3층 환경과 기후대응팀
 - 전자우편 : qjatn123@korea.kr
- 지원대상
 - 기존에 보유하던 경유 차량을 폐차 (수출말소, 차량초과 말소는 불가능)** 하면서, **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**하여 "어린이 통학버스"로 신고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(신고예정자 포함)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
 - (신청지역) 「도로교통법」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 상 시설 주소지가 '구리시'인 경우 신청 가능**
(자격) 「도로교통법」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*를 한 자 (신고 예정자 포함)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

***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 대상 시설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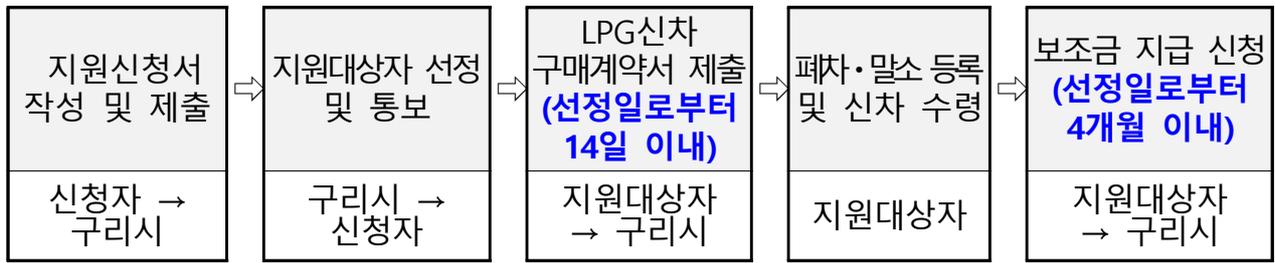
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, 특수학교, 학원, 체육시설(체육교습업 포함), 대안학교, 외국인학교, 유아교육진흥원, 교습소, 아동복지시설, 청소년수련시설, 장애인복지시설, 공공도서관, 시·도 평생교육진흥원, 시·군·구 평생학습관, 사회복지시설, 사회복지관 (총 18종)

- (차종) 중형 승용 · 승합(9인승이상 15인승이하) LPG 어린이 통학차량

< !! 지원대상 관련 유의사항 !! >

- 가. 보조금 지급 신청시 제출하는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증명서 상 시설 주소지와 사업 신청 지역이 동일해야 함
- 나. 폐차하려는 경유차량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경우,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 신고 예정 지역에 신청 가능
- 다. 어린이 통학차량 전용 모델이 아닌 일반형 또는 LPG외 연료 차량을 신차 등록하여 LPG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조변경한 후 「도로교통법」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제출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대상 포함 가능
- ※ 단,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시점에 신고필증을 첨부하는 경우 인정되며, 신차등록일로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일까지 2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
- 라. 차량공동 소유자(지입차주 포함)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제출이 가능할 경우, 지원 신청 가능
- 사업 신청자와 통학차 신고자가 다를 경우, 신차등록증과 신고필증상의 신차 정보(차량번호) 일치 확인 필요
 - 지원대상자 외 명의자의 위임장 제출 필요
- 마. 신차의 자동차등록증상 '용도'가 관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
- 국공립 시설은 자동차등록증 상 용도가 "관용"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
- 바. !! 2023. 11. 1. 이후부터 자진말소(폐차) 및 신차 구매등록을 한 경우에 보조금 지급 신청 가능 !!**

7. 지원절차



7-1. 지원 신청서 제출

가. 접수기간 : 2024. 3월 ~ 예산 소진 시까지(연중 수시 접수)

나. 접수방법 : 온라인 접수 / 등기우편 제출 / 방문 접수

다. 접수처

- 방문, 등기우편 접수 : 구리시청 환경과 기후대응팀 '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' 담당자 앞
- 온라인 접수 :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'mecar.or.kr'

※ 제출방법 : 로그인 > LPG차 전환지원 신청 > 어린이통학차량 지원신청 > 신청내역 > 구매계약서 제출

라. 지원 신청 제출서류

구 분	공 통	법 인(추가)
구비 서류	1. 지원신청서[붙임1] 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 동의서[붙임1-1] 3. 신분증 사본 4-1. 폐차 예정인 자동차 등록증 사본 4-2. (폐차했을 시) 자동차말소등록증 사본	1. 공통 서류 2.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인(또는 신고예정자) 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

<지원신청 관련 유의사항>

- ▶ 지원신청서 기재내용,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,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 접수
- ▶ 우편 발송소요 기간에 따른 접수기한 경과 또는 분실 등의 경우 접수처리가 불가하며 접수일자는 “접수처 우편 수령일”을 원칙으로 하고 접수처리 완료시 개별 문자 전송

7-2.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

가. 선정기준 : **선착순 대상자 선정**

※ 사업물량 초과 신청 시 선정 취소자 발생을 대비하여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검토 후 예비자 명단 모집

나. 선정결과 통보 : 수시 선정 및 통보

-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통보(휴대폰 문자 전송 등)
- 온라인 접수시 : 온라인 접수 사이트(mecar.or.kr) 로그인 후 신청내역 > 선정결과 확인 가능

7-3. 신차 구매계약 및 계약서 제출

가. 제출기한 : **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**

나. 접수방법 : 온라인접수 / 등기우편 제출 / 방문 접수

다. 접 수 처 : 구리시청 환경과 기후대응팀

- 방문, 등기우편 접수 : 구리시청 환경과 기후대응팀'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' 담당자 앞
- 온라인 접수 : 자동차 배출가스 **종합전산시스템** 'mecar.or.kr'
※ 제출방법 : 로그인 > LPG차 전환지원 신청 > 어린이통학차량 지원신청 > 신청내역 > 구매계약서 제출

7-4.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

가. 제출기한 : **※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(24. 11월 말 마감)**

나. 접수방법 : 온라인접수 / 등기우편 제출 / 방문 접수

다. 접 수 처

- 방문, 등기우편 접수 : 구리시청 환경과 기후대응팀'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' 담당자 앞
- 온라인 접수 : 자동차 배출가스 **종합전산시스템** 'mecar.or.kr'
※ 제출방법 : 로그인 > LPG차 전환지원 신청 > 어린이통학차량 지원신청 > 신청내역 > 구매계약서 제출

라. 지급 신청 제출서류

구 분	공 통	법 인(추가)	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(추가)
구비 서류	1. 지급신청서[붙임2] 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 동의서 [붙임2-1] 3. 폐차한 자동차 말소등록증* 4.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사본 5. 본인(법인) 통장 사본	1. 공통 서류 2.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(또는 신고예정자)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	1. 지원신청서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(신청서 본인) 외의 위임장 [붙임3] 및 인감증명서 (혹은 본인 서명사실확인서) 각 1부

* 지원신청 단계에서 기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

<보조금 지급신청 관련 유의사항>

- ▶ 지원대상자 **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,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**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하거나 후순위로 변경 가능
- ▶ 신차 출고 지연 등 특별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보조금 지급 청구기한 연장 가능
- ▶ 경찰서 담당자 부재 등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 신고 수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
- ▶ 온라인 신청 시,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(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)는 지자체 원본 제출(차량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)

8. 보조금 지급

가. 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제출되면 30일 이내에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 보조금을 지급

- 제출한 서류에 보완 또는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완료된 날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함
- **보조금 지급 이전에 보조금 신청자와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**

※ 단,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시설 또는 그의 장을 포함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가능

나. **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보조금 지급**

9. 유의사항

- 가. 보조금 부정집행 사례가 발견된 경우, 관련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
-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, **보조금 지급을 취소**하고, 해당 금액과 **보조금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환수**함. (단, 자동차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나뭇 또는 다뭇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)

- 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
- ㉡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
- ㉢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

-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, 미이행시에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됨
- 나. 보조금을 지급받은 차량 소유자는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(이하 '대기규칙'이라 함) 제79조의4에 따라 **의무운행기간(2년)을 준수**하여야 함
- 의무운행기간은 대기규칙 별표21의2에 의거하여 신차의 최초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산정
- 다. 의무운행기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, 대기규칙 별표21의2에 의거하여 **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**하며, 이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에 따라 환수 시점의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함

<의무운행기간 미이행 사례>

- ㉠ 수출·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
- ㉡ 어린이통학버스 외 차종으로 **튜닝**하는 경우

- 지자체장은 의무운행기간 내에 차량의 사고, 도난, 천재지변, 고장 등이 발생되어 더 이상 차량의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제출받아 예외 적용 가능
- 라.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「2024년 어린이통학차량 LPG 차 전환 지원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」 등 관련규정에 따름
- 마.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필요시 원본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
10. 문의사항

- 구리시청 환경과 (☎ 031-550-2325)
- 대한LPG협회 (☎ 1833-6501)

- 붙임
1. 지원신청서 1부.
 2.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.
 3. 위임장(공동명의 구매 시) 1부.
 4. 명의자 QnA 1부.

[별지 제3호서식]

위 임 장

수 임 자 (위임을 받는 자)	주 소		
	성 명	(인)	
	생 년 월 일		
위 임 자 (위임을 주는 자)	주 소		
	성 명	(인감도장 또는 서명)	
	생 년 월 일		
공동명의 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폐차(경유차)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차(LPG통학차)		
신차 차량 정보	차명	차종(정원)	
	등록번호	연료	제작연도

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 통학버스에 대한「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」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,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.

붙임 :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. 끝.

년 월 일

위 임 자 : (인감도장 또는 서명)

[참고] 명의자 관련 Q&A

(1) 사업 신청자인 “A(개인)”가 본인 명의 차량을 폐차하고 “A(개인)”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어린이통학차를 신고한 경우

⇒ 보조금 지급 가능

- “A(개인)”가 폐차·신차의 소유자이며 어린이통학차를 신고할 수 있는 경우로, 보조금 지원기준을 충족하여 지원 가능

(2) 사업 신청자인 “A(개인)”가 본인 명의 차량을 폐차하고 “A(개인)+B(개인)” 또는 “A(개인)+C(법인)”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“B(개인)” 또는 “C(법인)” 명의로 어린이통학차를 신고한 경우

⇒ 보조금 지급 가능

- “A(개인)”는 지입차주로, 차량을 구매·등록할 수 있으나 어린이통학차 신고는 “B(개인)”-보육시설 원장/대표(개인사업자 포함) 또는 “C(법인)”-보육시설이 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(원칙상 지입차주는 어린이통학차를 신고할 수 없음)
- 자동차등록증과 어린이통학차신고증명서의 자동차번호 일치여부를 통해 “A(개인)”의 소유권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
- 신차 차량이 공동명의임에 따라, 신청자인 “A(개인)” 외 명의자의 위임장 제출 필요

(3) 사업 신청자인 “A(개인)”가 “A(개인)+B(개인)” 또는 “A(개인)+C(법인)” 공동명의 차량을 폐차하고 “A(개인)”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어린이통학차를 신고한 경우

⇒ 보조금 지급 가능

- “A(개인)”가 폐차·신차의 소유자이며 어린이통학차를 신고할 수 있는 경우로, 보조금 지원기준을 충족하여 지원 가능
- 폐차 차량이 공동명의임에 따라, 신청자인 “A(개인)” 외 명의자의 위임장 제출 필요

(4) 사업 신청자인 “A(개인)”가 “A(개인)+B(개인)” 또는 “A(개인)+C(법인)” 공동명의 차량을 폐차하고 “A(개인)+B(개인)” 또는 “A(개인)+C(법인)”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어린이통학차를 신고한 경우

⇒ 보조금 지급 가능

- “A(개인)”가 폐차·신차의 소유자이며 어린이통학차를 신고할 수 있는 경우로, 보조금 지원기준을 충족하여 지원 가능
- 폐차 및 신차 차량이 공동명의임에 따라, 신청자인 “A(개인)” 외 명의자의 위임장 제출 필요

(5) 사업 신청자인 “B(개인)” 또는 “C(법인)”가 “A(개인)”와의 공동명의 차량을 폐차하고 “B(개인)” 또는 “C(법인)” 명의로 차량을 등록/통학차를 신고한 경우

⇒ 보조금 지급 가능

- “A(개인)”는 지입차주, “B(개인)”는 보육시설 원장/대표(개인사업자 포함), “C(법인)”는 보육시설인 경우를 의미
- 폐차 차량이 공동명의임에 따라, 신청자인 “B(개인) 또는 C(법인)” 외 명의자, 즉 “A(개인)”의 위임장 제출 필요

(6) 사업 신청자가 “A(개인)”이고 어린이통학차 신고자가 “B(개인)”인 경우

⇒ 보조금 지급 가능

- 사업 신청자와 어린이통학차 신고자가 다를 경우, 신차등록증과 신고증 명서상의 신차정보(차량번호) 일치 확인 필요
- 단, 신차가 공동명의(A·B)인 경우 “B”의 위임장 제출 필요

(7) 사업 신청자 “A(개인)”가 신차를 등록하고 보조금 지급 이전에 “B(개인)” 또는 “C(법인)”으로 신차의 명의를 변경하고 “B(개인)” 또는 “C(법인)” 명의로 어린이 통학차를 신고하는 경우

⇒ 보조금 지급 불가

- 보조금 지급 이전까지는 자동차등록증상 폐차와 신차 소유자가 일치해야 하며, 이 조건은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후 30일까지 충족 필요
- 보조금 지급 이전에 신청자 외 타인으로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지급 불가
- 단, 어린이통학차 신고를 위해, 신고자(“B” 또는 “C”)를 포함한 공동명의로 변경 시에는 보조금 지급 가능

(8) 사업 신청자가 “A(상위기관)”이고 신차등록증상 소유자가 “B(하위기관)”인 경우 (ex. 복지재단-복지관)

⇒ 보조금 지급 가능

- 상위기관과 하위기관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첨부서류 제출 필요 (법인 등기부등본, 상위기관 발급 공문 또는 동의서 등)

(9) 사업 신청자가 “A(하위기관)”이고 신차등록증상 소유자가 “B(상위기관)”인 경우 (ex. 복지재단-복지관)

⇒ 보조금 지급 가능

- 상위기관과 하위기관의 관계 입증 서류 제출(법인 등기부등본, 상위기관 발급 공문 또는 동의서 등)